

충청북도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 및 과태료부과징수 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발의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48
----------	-----

□ 제안이유

- '99. 1. 18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적용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조문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(제2조 제1호, 제5호, 제6호, 제9호)
- 주민편의를 위한 도달주의 채택(제4조 제1항)

□ 관련법규

-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

□ 첨부

- 충청북도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부
- 신구조문 대비표 1부
- 관련법규 발췌 1부

충청북도체육시설설치·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조(제1항) (안)

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·이용및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2조중 제1호, 제5호, 제6호, 제9호를 삭제한다.

제4조 제1항중 “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”를 “그 처분결과를 통보받은
날부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부과대상)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자로 한다.	제2조(부과대상)..... (삭 제)
1. 법 제12조 단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.	2.-4.(현행과 같음) (삭 제)
2.-4.(생략)	
5.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.	6.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.
6.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.	7.-8. (현행과 같음) (삭 제)
7.-8. (생략)	
9.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.	
제4조(이의신청)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②(생략)	제4조(이의신청)①.....그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②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령 발췌

[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]

제44조(관계법령)

第44條 (過怠料)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. <改正 99·1·18>

1. 削除<99·1·18>
 2.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
 - 2의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
 3.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體育指導者를 配置하지 아니하거나 體育指導者資格이 없는 者를 配置한 者
 4.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한 者
 5. 및 6. 삭제<99·1·18>
 7.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第42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小規模業種의 體育施設業의 營業을 한 者
 8.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閉鎖命令 또는 停止命令을 받고 第42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小規模營業의 體育施設業의 營業을 한 者
 9. 削除<99·1·18>
-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·道知事,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·徵收한다. <改正 99·1·18>
-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市·道知事,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 할 수 있다. <99·1·18>
-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市·道知事,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. <99·1·18>
-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.

附 則

第 1 條 (施行日)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.

第 2 條 (大衆골프場 竝設에 관한 經過措置 및 適用時限) ①이 法 施行당시 大衆 골프場을 직접 竝設하거나 大衆골프場造成費를 預置하기로 하고 會員을 모집하는 골프場業에 대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는 그 승인조건에 따라 大衆 골프場을 직접 竝設하거나 大衆골프場造成費를 預置하여야 하며, 大衆골프場의 병설을 완료하였거나 大衆골프場造成費를 預置한 때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衆골프場을 병설하거나 大衆골프場造成費를 預置한 것으로 본다.

②第14條 規定은 이 法 施行日부터 5年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. 다만,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衆골프場 竝設義務 또는 大衆골프場造成費 預置業務가 賦課된 者는 同 期限이후에도 그 義務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35條第2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하여 行政處分할 수 있다.<99·1·18>

第 3 條 (體育施設業의 명칭변경에 따른 經過措置)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정구場業 또는 미용體操場業의 申告를 한 者는 第10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테니스場業 또는 에어로빅場業 으로 각각 申告한 것으로 본다.